

# 인천장학회육성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0. 10. 29(금)

기획행정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 2010. 10. 8
- 나. 제안자 : 인천광역시장
- 다. 회부일자 : 2010. 10. 11
- 라. 상정일자 : 2010. 10. 27 (제188회 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 제안설명 : 정태욱 기획관리실장
  - 검토보고 : 기획행정전문위원 박형섭
  - 질의 및 토론
  - 수정가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 가. 제안이유

- 재단법인 인천장학회의 장학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에서 출연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에 따라 명확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 재단법인 인천장학회의 발전과 건전한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전부 개정하여 보완·정비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재단법인의 설립 근거 및 재단의 성격을 규정함.(안 제1조 내지 2조)
- 장학회의 기금 확대와 다양한 장학사업 발굴을 위하여 기관·단체 및 인천광역시에서 위탁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3조)

- 장학회 재산의 조성 항목을 명기하고 인천광역시에서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4조, 안 제9조)
- 재단의 공익성을 감안하여 재단을 관리 감독하고자 정관 변경 사항과 연간사업계획, 예산서 작성시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득하도록 함.(안 제6조 2항, 안 제8조 1항)
- 장학회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공무원 파견 근거를 마련함.(안 제10조)
- 재단법인 인천장학회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보완함.(안 제11조)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 ○ 동 조례안의 전부개정안은

- 현행 조례상의 재단법인 인천장학회의 설립근거 및 장학사업에 필요한 재원 출연의 근거가 미약함에 따라
- 민선 5기에 맞추어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기금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 명확한 법적 근거를 위해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는 등 동 조례를 전부개정 하고자 하는 것임.

#### ○ 주요 개정 내용은

- 안 제3조에 장학회의 사업내용을 신설하였으며
- 안 제4조에 장학회의 재산조성 재원을 명확하게 하였으며
- 안 제6조에 장학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도록 함으로써 재단에 대한 지도·감독권한을 강화하였음.

#### ○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 조례안 제8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에 있어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사업실적 및 결산은 당해 사업의

-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행하여야 함을 규정 한 바 조례에서의 “3월말 까지”를 “2월말 까지”로 수정함이 타당하며,
- 현재 기금 조성액은 60억원이 조성되어 있는바 향후 조성목표액 및 조성방법과 장학금 지원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재)인천장학회 운영상황

- 조직구성 : 1985. 1. 7일 재단법인 설립 (교육청 법인 설립허가)
  - 이사회 : 이사 7인, 감사 2인 (이사장 1인, 부이사장 1인)
  - 사무국 : 직원 1명
- 장학금 지급 현황 ('86~'09) : 6,751명 30억원
  - 예치기금 이자수입으로 매년 지급
- 기금 조성 현황 ('10. 9월 현재)
  - 기본재산 60억원 (시 출연금 34억원, 기부금 26억원)
  - 주요재원 (시 출연금, 신세계백화점 기부금, 이자수입 등)

<참 고 1>

- 지역별 장학재단 운영현황 -

(단위 : 명, 백만원)

지역	장학회명	설립연도	기본재산	2009년도 장학금 지급		장학사업	비고
				학생수	금액		
서울	서울장학재단	2008	500	6,104	16,200	장학금 지급	
대전	인재육성장학재단	2009	1,500	400	300	장학금 지급	
인천	(재)인천장학회	1986	6,000	272	240	장학금 지급	
경기	(재)경기도민회	1986	20,100	510	1,120	장학금 지급	
충북	(재)충북 인재양성재단	2008	20,000	800	1,400	장학금지급 국내·외 체험연수, 아이디어 올림픽 개최 등	"
충남	(재)충청남도 장학회	2002	8,400	384	597	장학금지급 영재육성장학생 해외연수장학생 유학장학생 선발 등	"
전북	(재)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1992	10,300	178	400	장학금지급 장학생선발, 해외연수 장학숙 운영 등	"
제주도	(재)제주 국제화장학재단	2000	6,180	-	-	영어캠프, 해외연수, 퀴즈캠프대회 개최 등	"

<참 고 2>

- 인천장학회 장학금 지급현황 -

(단위 : 천원)

구분	인 원				장 학 금			
	소계	대학생	중·고·직업 훈련원	근 로 청소년	소계	대학생	중·고·직업 훈련원	근 로 청소년
계	6,751	1,532	3,368	1,851	3,000,244	1,744,809	1,170,749	84,686
2009	272	147	125	0	230,000	192,500	37,500	0
2008	260	139	121	0	200,000	163,700	36,300	0
2007	252	122	130	0	180,000	141,000	39,000	0
2006	240	94	146	0	157,500	121,200	36,300	0
2005	220	87	133	0	145,900	112,800	33,100	0
'86~2004	5,507	943	2,713	1,851	2,086,844	1,013,609	988,549	84,686

<참 고 3>

- 인천장학회 임원현황 -

직 명	성 명	임 기	현 직 책	비 고
이 사 장	송 영 길	재임기간	인천광역시장	당연직
부이사장	나 근 형	재임기간	인천광역시 교육감	당연직
이 사	황 구 연	재임기간	신한은행 인천본부장	당연직
"	심 정 구	2008.8.22 ~ 2011.1.4	선광공사 부회장	임기4년
"	김 용 구	2007.2.27 ~ 2011.1.4	코아타운 회장 (제3대 시의원)	임기4년
"	신 원 철	2009.1.6 ~ 2013.1.5	노인인력개발센터 회장 (전 연수구청장)	임기4년
"	김 소 립	2007.2.27 ~ 2011.1.4	인천영양사회 회장 (제5대 시의원)	임기4년
감 사	민 만 기	2010.5.14 ~ 2012.5.13	민만기 공인회계사	임기2년 만료
"	정 태 옥	재임기간	인천광역시 기획관리실장	당연직

## <참 고 4>

### - 인천장학회육성등에관한조례 -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 양성을 위하여 재단법인 인천장학회(이하 "장학회"라 한다)에 장학금출연(이하 "출연금"이라 한다)등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출연금)** 인천광역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범위안에서 장학회에 장학금을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연금의 총액(기출연된 출연금 포함)은 시 일반회계 예산의 100분의 1 이내로 하여야 한다.

**제3조 (출연금 운영 및 관리)** ① 출연금은 수익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금융기관 또는 채신관서 등에 이자률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거나, 국·공채 기타 유가증권 등을 매입하여 관리한다.1

② 장학금 지급 등에 관하여는 장학회 이사장이 한다.

**제4조 (장학금지급 사항 등 보고)** 장학회 이사장은 매년 3월말까지 전년도 장학금 지급 및 출연금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 (지도감독)** 시장은 장학회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6조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 부 칙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4. 질의 및 답변요지

##### < 질 의 >

- 신동수, 차준택, 전원기 위원
  - 현재까지 장학금 지급 및 선발기준
  - 장학회 결산서를 3월말까지로 정한 사유
  - 장학회 이사에 시의원 추가할 용의

##### < 답 변 >

- 정태옥 기획관리실장, 조인권 교육지원담당관
  -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저소득층 학생중 학교장의 추천에 의해 선발
  - 기존 조례의 내용을 참고하여 발생한 사항임.
  - 추가할 용의가 있음

#### 5. 토론요지

가. 찬 성 : 없 음.

나. 반 대 : 홍성욱, 신동수, 이재병, 전원기, 차준택, 허회숙 위원

####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재석위원 전원찬성 : 6명)

#### 7. 수정안 요지

- 안 제7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② 이사는 시 공무원, 시 교육청 관계자, 장학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로 한다.” 를
  - “② 이사는 시 공무원, 시 의원, 시 교육청 관계자, 장학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로 한다.” 로 수정하고
- 안 제8조 제2항 중
  - “매년 3월말까지”를 “매년 2월말까지”로 수정한다.



## 8. 기타사항

○ 특이사항 없음

붙임 : 1. 수정안 1부.

2. 수정안 조문 대비표 1부.

3. 인천장학회육성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

# 인천장학회육성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인천장학회육성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7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이사는 시 공무원, 시 의원, 시 교육청 관계자, 장학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로 한다.

안 제8조 제2항 중

“매년 3월말까지”를 “매년 2월말까지”로 한다.

# 수정안 대비표

전부 개정안	수정안
<p>제7조(임원 등) ① &lt;생략&gt;</p> <p>② <u>이사는 시 공무원, 시 교육청 관계자, 장학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로 한다.</u></p> <p>③ &lt;생략&gt;</p> <p>제8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lt;생략&gt;</p> <p>② 장학회는 매년 <u>3월말까지</u> 전년도 장학금 지급 및 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과 결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7조(임원 등) ① &lt;개정안과 같음&gt;</p> <p>② <u>이사는 시 공무원, 시 의원, 시 교육청 관계자, 장학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로 한다.</u></p> <p>③ &lt;개정안과 같음&gt;</p> <p>제8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lt;개정안과 같음&gt;</p> <p>② 장학회는 매년 <u>2월말까지</u> 전년도 장학금 지급 및 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과 결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 인천장학회육성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장학회육성등에관한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재단법인 인천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 양성을 위하여 재단법인 인천장학회의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재단법인 인천장학회(이하 "장학회"라 한다)는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제3조(사업) 장학회는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우수 인재육성 및 장학금 지원 사업
2. 지방자치단체, 각종 단체 등의 장학금 수탁관리
3. 그 밖에 장학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

제4조(재산의 조성) 장학회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2.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품
3. 장학회의 사업수익금
4. 이자수익금
5. 그 밖의 수입금

제5조(재산 운영 및 관리) 장학회는 기본재산에 대하여 수익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 등에 예금으로 예치하거나, 국채·공채 그 밖의 유가증권 등을 매입하여 관리한다.

제6조(정관) ① 장학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6.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7. 이사의 임면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
9. 사업 및 그 수행에 관한 사항

② 장학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임원 등) ① 장학회는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② 이사는 시 공무원, 시 의원, 시 교육청 관계자, 장학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로 한다.

③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의 임기, 임면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장학회는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장학회는 매년 2월말까지 전년도 장학금 지급 및 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과 결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재정지원) 시장은 장학회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 (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장학회가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소속 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할 수 있다.

제11조 (지도감독)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장학회의 운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감독할 수 있다.

제12조 (운영규정) 장학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 및 정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운영된 재단법인 인천장학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인천장학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진행 중이거나 이루어진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